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74

제안연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은 그 적용범위가 ‘사립유치원’, ‘학원’까지 포함하고 있음

○ 이처럼 교육청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까지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준수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동 개정조례안의 적용범위 중 어린이놀이시설은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 하며 단, 학원 및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(안 제6조제3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서툴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. 단, 학원 및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교육청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·공간 등에 적용한다.	제6조(적용범위) ----------.	제6조(적용범위) (개정안과 같음)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1.·2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3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	3. ---------- 중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. 단, 학원 및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	4.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. 단, 학원 및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교육청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・공간 등에 적용한다.	제6조(적용범위) ----------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. 단, 학원 및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